

의안번호	제 260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9월 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60
----------	-----

제출연월일 : 2008년 9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학사 신축이전과 충북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추진방법과 사업
규모를 변경하고
-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도 노인회관 증축과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유임야를 매입하며
- 소방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진천군과의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북학사 신축이전》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외 6필지
- 사업규모 : 부지매입 2,692㎡ 건물 지하1·지상10층 연 12,586
㎡
- 사업기간 : 2007. 12 ~ 2009. 9
- 사 업 비 : 45,000백만원

※ 변경내역

- 추진방법 : 신축 → 매입
- 부지매입 : 3,600㎡ → 2,692㎡(감 908㎡)
- 건물신축 : 10,000㎡ → 12,586㎡(증 2,586㎡)

- 투자계획 : 2009년 - 45,000백만원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
- 증축규모 : 735m²
- 사업기간 : 2007. 4 ~ 2008. 12
- 사 업 비 : 1,293백만원
- ※ 변경내역
 - 증축규모 : 2개층 1,468m² → 1개층 735m²(감 733m²)
 - 사 업 비 : 1,830백만원 → 1,293백만원(감 537백만원)
- 투자계획 : 2008년 - 1,293백만원

《진천소방서 덕산 119 안전센터 신축》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50외 4필지
- 사업규모 : 토지매입 7,506m², 건물신축 지하1·지상2층 826m²
- 사업기간 : 2008. 9 ~ 2009. 12
- 사 업 비 : 1,600백만원
- ※ 변경내역
 - 부지매입 : 진천 덕산 옥동 287외 2필지 3,300m²
→ 진천 덕산 옥동리 250외 4필지 7,506m²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2층 740m² → 826m²
 - 사 업 비 : 1,550백만원 → 1,600백만원
- 투자계획 : 2008년 - 650백만원, 2009년 - 950백만원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58
- 증축규모 : 지하1·지상3층 연 990m²
- 사업기간 : 2008. 10 ~ 2009.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투자계획 : 2008년 - 1,200백만원

《공유임야 확대조성》

- 위 치 :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산 8외 5필지
- 매입규모 : 임야 844,053㎡(세부내역 따로 붙임)
- 사업기간 : 2008. 9 ~ 2008. 12
- 사 업 비 : 923백만원(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 투자계획 : 2008년 - 923백만원

□ 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교환》

- 교환시기 : 2008. 9 ~ 2009. 12
- 교환대상
 - 취득(군유지)
 - 진천 진천 장관 6-2외 5필지 9,932.8㎡(소방청사 부지 등)
 - 처분(도유지)
 - 진천 이월 송림 130외 29필지 14,851㎡(화풍이월체육공원 부지)
- 사업기간 : 2008. 9 ~ 2008. 12
- 사 업 비 : 114백만원(도비)
- 투자계획 : 2008년 - 114백만원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3 건	854,251.00	20,686,200				
	건물	4 건	15,137.00	29,329,800				
	기타							
1	토지	서울 영등포 당산 121-64외 6필지	2,692.00	19,113,200	2007~ 2009	충북학사 이전	(주)대원	매 입
	건물	서울 영등포 당산 121-64외 6필지	12,586.00	25,886,800	2007~ 2009	충북학사 이전	(주)대원	매 입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 흥덕 사직 554-58	990.00	1,200,000	2008~ 2009	노인취업 및 교육공간 확보	증 축	
	기타							
3	토지							
	건물	청주 상당 방서 38-7	735.00	1,293,000	07.4~ 08.12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증 축	
	기타							
4	토지	진천 덕산 옥동 250외 4필지	7,506.00	650,000	08.9~ 09.12	덕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	김철희외	매 입
	건물	"	826.00	950,000	"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신 축	
	기타							
5	토지	청원 미원 금관 산 8외 5필지	844,053.00	923,000	08.9~ 08.12	공유임야 확대 조성	박동민외3	매 입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7-5)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 상 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m ²)					
계	토지	취득	1 건	9,932.80	671,194			
		처분	1 건	14,851.00	556,763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1	토지	취득	진천 진천 장관 6-2외 5필지	9,932.80	671,194	09.9-12	점유 또는 필요한 재산을 교환확보 하여 효율성 제고	진천군수
		처분	진천 이월 송림 130외 29필지	14,851.00	556,763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매입대상 토지내역

(단위: m²,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비 (용도)
	계 18필지		854,251	20,686,200,000	
1	서울 영등포 당산 121-64	대	551	3,912,100,000	충북회사 신축 이전부지
2	서울 영등포 당산 121-65	대	357	2,534,700,000	
3	서울 영등포 당산 121-66	대	314	2,229,400,000	
4	서울 영등포 당산 121-275	대	393	2,790,300,000	
5	서울 영등포 당산 171-1	대	327	2,321,700,000	
6	서울 영등포 당산 121-280	대	605	4,295,500,000	
7	서울 영등포 당산 121-281	대	145	1,029,500,000	
8	진천 덕산 옥동 250	전	377	32,045,000	덕산 119안 전 센터 신축부지
9	진천 덕산 옥동 284-1	전	1,314	208,505,000	
10	진천 덕산 옥동 251-4	답	2,453	124,780,000	
11	진천 덕산 옥동 251-5	답	1,468	160,990,000	
12	진천 덕산 옥동 251-6	답	1,894	123,680,000	
13	청원 미원 금관 산8	임야	493,488	569,726,000	공유임야 확대 조성부지
14	청원 미원 금관 238	임야	2,446	3,053,000	
15	청원 미원 금관 239	임야	764	954,000	
16	청원 미원 금관 240	임야	1,015	1,267,000	
17	괴산 연풍 주진 산 4-1	임야	267,792	264,000,000	
18	괴산 청천 대티 산14-30	임야	78,548	84,000,000	

공유재산 교환대상 토지내역

□ 도유지(처분)

(단위:㎡,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계 30필지		14,851	556,763,300	
1	진천 이월 송림 130	답	3,242	64,840,000	체육시설 부지
2	" 609- 3	답	585	21,645,000	"
3	" 609-30	대	241	8,435,000	"
4	" 609-51	답	311	12,066,800	"
5	" 609-52	대	337	17,726,200	"
6	" 609-53	잡종지	985	44,423,500	"
7	" 609-54	도로	317	3,867,400	"
8	" 609-55	답	3,729	112,988,700	"
9	" 609-56	답	332	7,868,400	"
10	" 609-57	답	268	13,024,800	"
11	" 609-58	하천	599	16,951,700	"
12	" 609-59	잡종지	122	8,283,800	"
13	" 609-60	답	215	11,911,000	"
14	" 609-61	대	297	22,423,500	"
15	" 609-62	도로	228	6,452,400	"
16	" 609-63	잡종지	100	6,790,000	"
17	" 609-64	하천	321	9,084,300	"
18	" 609-65	대	214	18,575,200	"
19	" 609-66	대	183	15,884,400	"
20	" 609-67	대	303	26,300,400	"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21	진천 이월 송림	609-68	대	263	22,828,400	체육시설지 채부
22	진천 이월 송림	609-69	도로	735	20,800,500	
23	"	609-70	잡종지	151	10,252,900	"
24	"	609-71	전	200	13,880,000	"
25	"	609-75	대	42	2,326,800	"
26	"	609-76	잡종지	8	543,200	"
27	"	609-77	잡종지	427	28,993,300	"
28	"	609-78	잡종지	39	2,648,100	"
29	"	609-79	대	15	1,302,000	"
30	"	609-80	대	42	3,645,600	"

□ 공유지(취득)

(단위:m², 원)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용 도)
	계 6필지			9,932.8	671,193,900	
1	진천 진천 장관	6-2	전	1,825.0	116,617,500	소방청사
2	" 행정	876	답	4,084.0	77,596,000	비축토지
3	진천 덕산 한천	501	답	2,852.8	65,614,400	"
4	진천 광혜원 광혜원	529-1 36	대	390.0	139,230,000	소방청사
5	"	529-1 39	대	388.0	138,516,000	"
6	"	529-1 40	대	393.0	133,620,000	"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6항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토지,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 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